

농수산물도매시장·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(제44조제1항 관련)

시 설		부류별	양	청			수			축			화	약
		도시인구별 (단위: 명)	곡	과			산			산			혜	용
		-	30만 미만	30만 이상 ~ 100 만 미만	100만 이상	30만 미만	30만 이상 100만 미만	100만 이상	30만 미만	30만 이상 100만 미만	100만 이상	-	-	
		대 지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	m ²
		건 물	1,650	3,300	8,250	16,500	1,650	3,300	6,600	1,320	2,640	5,280	1,650	1,650
			660	1,320	3,300	6,600	660	1,320	2,640	530	1,060	2,110	660	660
필수 시설	경매장(유개[有蓋])	500	990	2,480	4,950	500	990	1,980	170	330	660	500	500	
	주 차 장	500	330	830	1,650	170	330	660	170	330	660	330	330	
	저온창고(농수산물 도매시장만 해당한다)		300	500	1,000									
	냉 장 실					17 (20톤)	30 (40톤)	50 (60톤)	70 (80톤)	130 (160톤)	200 (240톤)			
	저 빙 실					17 (20톤)	30 (40톤)	50 (60톤)						
	쓰레기 처리장	30	30	70	100	30	70	100	70	130	200	30	30	
	위 생 시 설 (수세식 화장실)	30	30	70	100	30	70	100	30	70	100	30	30	
	사 무 실	30	30	50	70	30	50	70	30	70	100	30	30	
	하주대기실 · 출하상담실	30	30	50	70	30	50	70	30	70	100	30	30	
	하역인 편의시설	30	30	50	70	30	50	70	30	70	100	30	30	

[illegible]

장·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.

8. 수산부류중 활어류·패류·해조류·건어류·염건어류·염장어류·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저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
9.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·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
10.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 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고, 주차장·사무실·하주대기실·출하상담실을 필수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.
11.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하역 전문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매시장에서 하역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역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